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토록 하고, 그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만 인정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요건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서 무주택일 경우 인정토록 기준을 완화하며,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거주 중인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으로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도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행복주택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급 이력이 있는 출산 가구가 추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신설하는 등 혼인 및 출산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를 신설·정비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자녀 기준을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으로 명확히 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는 보호종료아동을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까지 확대하고,

현행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은 사실상 저소득층만 입주가능토록 설정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데 목적을 둔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현행 입주자

선정방법으로는 그 취지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 구간별로 공급물량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50퍼센트”를 “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한다.

제25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2세 이하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해당 단지 또는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해당 단지와 동일한 유형의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이주(이주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후순위로의 예비입주자 등록을 말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같은 단지 내 또는 다른 단지의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는 허가할 수 있다.

2.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3. 영 제 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이주를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0항에 따른 이주 허가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의 입주자격란 아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태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입주자격란 중 “태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의 입주자격란 다) 중 “태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태아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며, 행복주택 거주 중 출산·입양한 경우를 말한다)한 행복주택 임차인은 제1호에 따른 소득 및

자산(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는 제외한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제3호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나목1)다) 중 “태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8)나) (2)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분에 따른 최소 공급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를 “순서에 따라 공급한다”로 하고, 같은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 1) 및 2)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1) 해당 단지 전체 공급물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공급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수요·공급 상황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

우: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45% 이상

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30% 이상

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인 세대의 경우: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15% 이상

별표 6 제1호가목2) 중 “10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1)나) 중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를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신혼부부

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를 “예비신혼부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가) 및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라) 위 다)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가) 및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라) 위 다)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공공주택사업자는 아목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5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별표 6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호마목”을 “제1호나목1)가) 및 2)가)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마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호마목”을 “제1호나목1)가) 및 2)가)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마목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가목2) 중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중전의 2)) 중 “1)에 따라 공급”을 “2)에 따라 공급”으로, “1)에 따라 입주자”를 “1) 및 2)에 따라 입주자”로 하며, 같은 목 4)(중전의 3)) 중 “2)”를 “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나) 중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를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를 “예비신혼부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및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호

바목”을 각각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자목”으로 한다.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2)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공급한다.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나목, 다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차. 공공주택사업자는 자목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5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별표 6의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공급한다. 다만,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증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 시에는 단지 내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가) 제1순위: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순위: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별표 3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2)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공급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수요·공급 상황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비율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
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5% 이상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0% 이상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
과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상

별표 6의4 제1호나목의 “가목”을 “가목1)”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한다”를 “태아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타목
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태아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
중 출산·입양한 경우를 말한다)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임
차인은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할 수 있다.

별표 6의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에 따라 공급”을 “나목에 따라 공급”으로, “가목에 따라 입주자”를 “나목에 따라 입주자”로 한다.

가.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가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가목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급한다.

별표 6의5 제3호에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공주택사업자는 다목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5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마.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바.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별표 6의6 제1호가목2) 중 “100퍼센트”를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고, 같은 목에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 중 “1)에 따라 공급”을 “2)에 따라 공급”으로, “1)에 따라 입주자”를 “1) 및 2)에 따라 입주자”로 하고, 같은 목 4)(종전의 3)) 중 “2)”를 “3)”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1)다) 중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및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호 라목”을 각각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라목 및 바목”으로 한다.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2)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공급한다.

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사. 공공주택사업자는 바목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5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별표 5 제4호차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재계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차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 ----- ----- ----- -----.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15조[별표 4 제3호다목1)은 제외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별표 4에 따른 소득요건의 <u>50퍼센트</u>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 ----- ----- ----- <u>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① ~ ⑨ (생략)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⑩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

업자는 2세 이하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해당 단지 또는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해당 단지와 동일한 유형의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이주(이주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후 순위로의 예비입주자 등록의 말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같은 단지 내 또는 다른 단지의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는 허가할 수 있다.
2.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u><신 설></u>	<u>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u> 3. 영 제 2조제1항제7호에 따른 <u>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u> 4. 이주를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0항에 따른 이주 허가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